

[] 배우자 출산휴가
[] 난임치료휴가
확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기본 사 항	① 사업장관리번호			
	② 우선지원대상기업	[]해당 []비해당	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름)	
	③ 사업장명			
	④ 사업장소재지			
	⑤ 담당자	성명: _____ 전화번호: _____ (전자우편 주소: _____)		
	⑥ 근로자 성명		⑦ 근로자 주민등록번호	
	⑧ 배우자 출산일(배 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에만 작성)	년 월 일	⑨ 분할사용 여부	[]에 []아니오

⑩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부여기간	년 월 일 ~	년 월 일
	년 월 일 ~	년 월 일
	년 월 일 ~	년 월 일
	년 월 일 ~	년 월 일
	년 월 일 ~	년 월 일
	년 월 일 ~	년 월 일
⑪ 휴가부여기간 중 통상임금지급액 (급여지급액이 없으면 "없음"으로 기재)		
⑫ 통상임금 (휴가시작일 기준)	산정기준: [] 시급 [] 일급 [] 주급 [] 월급 (기타 _____) 통상임금: _____ 원	
⑬ 산정기준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(휴가시작일 기준)	월	시간

「고용보험법」 제71조 및 제7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.

확인자 사업장명

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◎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작성·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.

1.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.
2. ②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.
3. ⑨란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고, 난임치료휴가의 경우에도 연간 휴가일수를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"예"라고 표시합니다.
4. ⑩란의 휴가부여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.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은 후 ⑨란의 분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"예"라고 표시해야 합니다.
5. ⑪란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(지급예정인 경우 포함)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, 없으면 "없음"이라고 적습니다.
6. ⑫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.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, 시급, 일급, 주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 산정기준에 "○"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(시급, 일급, 주급)을 적습니다.
※통상임금: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6조와 「통상임금 산정지침」(고용노동부예규) 참조
「통상임금 산정지침」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<법령정보실-예규>에서 검색 가능
7. ⑬란의 소정근로시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⑫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(일급인 경우 일, 주급인 경우 주, 월급인 경우 월 등)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,
-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,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.